

 국토교통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9. 21.(금) / 총5매(본문2, 참고3)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인, 사무관 이형주 ·☎ (044) 201-4600, 4603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철도 현장 작업자 안전강화한다..안전수준 평가제 도입 추진 **안전투자내역 공시·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기준 규정..안심철도 구현 기대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안전투자공시제, 안전수준평가제를 도입하고 현장관리자 및 철도경찰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과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.
-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기관에게 안전에 대한 투자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안전투자공시제와 철도기관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도 포함되어 있다.
 - 안전투자공시제는 철도기관들이 안전에 대해 어느 정도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, 안전친화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취지의 제도이다.
 - 안전관리 수준평가제는 철도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수준과 철도안전제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관들의 안전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.
- 또한 철도작업현장에서 현장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(작업책임자, 운행안전관리자)의 세부 준수사항이 규정되었고, 철도경찰의 직무장비 사용기준이 규정되었다

- 철도작업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작업책임자와 운행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이 입법화되었고 그 세부적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이다.

- * (작업책임자)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협의, 지휘, 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자
- * (운행안전관리자)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

- 지금까지 철도경찰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직무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직무장비 사용근거를 입법화하고 현장에서 장비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현장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.

-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8.9.21.~2018.10.31. 까지이며,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다.

-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-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면서 “입법예고를 통하여 여러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한편,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보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안전정책과 이형주 사무관(☎ 044-201-460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안전투자공시제도 세부절차 도입

(철도안전법 개정내용)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를 공시하도록 함(법 제6조의2)

① 공시기준 구체화(규칙 안 제8조 제1항~제2항)

- 필요한 안전투자와 실제 지출한 안전투자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, 최근 3년간의 안전투자 소요(계획)와 실적을 공시하도록 함

② 공시절차 명확화(규칙 안 제8조 제3항)

- (공시 시기) 공시금액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, 공시시기를 철도운영자의 회계 결산이 마무리되는 5월말로 규정
- (공시 방법) 국민의 투자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 종합포털과 해당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시자료를 게시하도록 함

③ 작성기준 고시(규칙 안 제8조 제4항)

- 철도운영자별 투자공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,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

2. 안전관리 수준평가제 절차 규정

(철도안전법 개정내용) 철도운영자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철도안전우수운영자를 지정(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)

① 평가대상·시기(규칙 안 제9조제1항)

- 국토부장관은 모든 철도 운영자와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년 3월에 수준평가 시행

② **평가지표 · 방법**(규칙 안 제9조제2항)

- 평가는 3가지 지표(사고지표, 안전투자, 안전관리)를 측정하며, 서면(사고, 안전투자, 정기검사 실적)과 면접(성숙도 검사) 심사를 하도록 함

③ **평가결과 공개**(규칙 안 제9조제5항)

- 수준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준평가를 시행한 경우, 철도운영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,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

3. **작업책임자 · 운행안전관리자 세부 준수사항 마련**

(철도안전법 개정내용) 작업책임자,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(안전교육을 실시 등)을 규정하고, 작업책임자,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음주제한 대상에 추가(법 제40조의2, 법 제41조)

① **작업책임자 준수사항**(규칙 안 제76조의6)

-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당일 작업계획, 작업 및 현장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,
 -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, 이례상황 발생시 열차방호 조치 및 작업 후 열차안전운행 가능여부 확인하여 보고 등을 준수하도록 함

② **철도운행안전관리자 준수사항**(규칙 안 제76조의7)

-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수행 전 열차감시인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, 열차감시인의 보호구 착용 및 휴대폰 구비상황 등을 점검하고,
 - 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중 관할역 · 작업책임자 간 연락체계 구축, 작업시간내 작업현장 이탈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함

4. 철도경찰 직무장비 사용기준 마련

(철도안전법 개정내용)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장비 사용근거를 마련하고, 직무장비 종류, 안전교육·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법 제48조의3)

① 철도경찰 직무장비의 사용기준(규칙 안 제85조의5)

- 가스분사기, 전자충격기 등 직무장비는 범인의 체포,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
 - * 철도안전법」(제48조의3제3항)은 직무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사전에 안전교육·검사를 받도록 의무화
- (가스분사기·발사총) 범인 도주방지, 사람의 생명·신체 방호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, 1M 이내에서는 얼굴을 향한 발사 금지
- (전자충격기)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를 상대로 사용하지 못하며, 전극침(電極針) 발사장치의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향한 발사를 금지
- (경비봉) 사람의 생명·신체의 위해와 공공시설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되,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
- (수갑·포승) 체포·구속영장의 집행, 법적절차에 따른 호송, 주취자·정신착란자의 자살·자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